

##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 :	접수일자 :
--------	--------

### 1. 인적사항

① 공익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)	
③ 대표자		④ 사업연도	
⑤ 소재지		⑥ 전자우편주소	
		⑦ 전화번호	
⑧ 공익사업 유형	1.교육 2.학술·장학 3.사회복지 4.의료 5.종교 6.문화 7.기타		
⑨ 외부세무확인대상	1.여 2.부	⑩ 수익사업 운영	1.여 2.부
⑪ 회계감사이행여부	1.여 2.부	⑫ 성실공익법인여부	1.여 2.부

### 2. 자산보유현황

⑬ 총자산가액 (⑭+⑮+⑯+⑰+⑱)	⑭ 토지	⑮ 건물	⑯ 주식·출자 지분 등	⑰ 예금·적금 등 금융자산	⑱ 기타

### 3.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

구분	⑲ 합계 (⑳+㉑+㉒+㉓+㉔)	수익사업							㉕ 기타 수익 사업	㉖ 고유 목적 사업
		금융				부동산				
		㉗ 소계	㉘ 이자	㉙ 배당	㉚ 기타	㉛ 소계	㉜ 임대	㉝ 매각		
수입금액										
필요경비										
소득금액										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출연재산·운용소득·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(별지 제24호서식)</li> <li>2.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(별지 제25호의2서식)</li> <li>3.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(별지 제25호의3서식)</li> <li>4. 운용소득 사용명세서(별지 제25호의4서식)</li> <li>5. 주식(출자지분) 보유명세서(별지 제26호서식)</li> <li>6. 이사 등 선임명세서(별지 제26호의2서식)</li> <li>7.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(별지 제26호의3서식)</li> <li>8.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,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,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,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,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, 장부의 작성·비치의무 불이행 명세서, 보유부동산명세서(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인적사항(①~⑫)

- 가. 인적사항란(①~⑦)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.
- 나.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  
예)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→ 'X1.1.1 ~ 'X1.12.31  
    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→ 'X1.3.1 ~ 'X2.2.28
- 다.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"○"표시를 합니다.
- 라.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.
- 마.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.
- 바. ⑪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.(회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'여'로 표시)
- 사. ⑫성실공익법인여부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.

2. 자산보유현황(⑬~⑱)

- 가.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(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)을 적습니다.
- 나. ⑬총자산가액란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

3.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(⑲~㉔)

- 가.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.
- 나.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·경비 등 비용을 적으며,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습니다.
- 다.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.
- 라.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(1) 금융(㉑~㉓): ㉑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(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제2호), ㉒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(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제3호), ㉓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(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)을 적습니다.
  - (2) 부동산(㉔~㉖):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(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제1호·제5호)을 적습니다.
  - (3) 기타수익사업(㉗):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(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제1호·제5호)을 적습니다.
  - (4) 고유목적사업(㉘): 금융·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습니다.  
예) 회비수입, 교비수입, 기부금수입(출연받은 재산) 등